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03 발의연월일: 2020. 11. 13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• 이용빈 • 민병덕

진성준 • 서영석 •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30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제3항 중 "貸借對照表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30條(持分讓渡 등의 예외) ①・	第30條(持分讓渡 등의 예외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流動化專門會社는 商法 第5	③
8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	
는 同法 第462條의 規定에 불	
구하고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	
라 이익(<u>貸借對照表</u> 상의 資産	재무상태표
에서 負債·資本金 및 準備金을	
공제한 금액을 말한다)을 초과	
하여 配當을할 수 있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